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68회 임시회
' 18. 10. 11.(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육미선 의원 등 8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8년 10월 02일
- 회부일자 : 2018년 10월 04일

3. 제안사유

- 충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 정보 수집 및 정기 실태조사(3년)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라. 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도 내 센터 현황(7) : 충북광역새일센터(1), 산단형 새일센터(1), 기초새일센터(5)

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임.

※ 조례 미 제정 지역(2) : **충북**, 강원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8.)에 따르면 최근 충북은,
 -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이 77.5%, 여성이 55.2%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약 22%p 수준으로, 전국 격차인 20%p보다 약간 상회하지만, 지난 10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실질적으로 정체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고용동향도 남성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2.6%p 증가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2.0%p 감소하여, 최근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이 20%p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여전히 미흡함.

※ 충북고용률: 남성 73.1%(‘17.8.) → 75.7%(‘18.8), 여성 54.3%(‘17.8.)→53.5%(‘18.8.)

<표> 경제활동현황 지표 (2018. 8. 기준)

(단위 : 천명, %)

	전국			충청북도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15세이상인구	44,211	21,713	22,498	1,386	693	693
경제활동인구	28,039	16,045	11,995	920	537	383
비경제활동인구	16,172	5,668	10,504	466	156	310
경제활동참가율	63.4	73.9	53.3	66.4	77.5	55.2
실업률	4.0	4.2	3.8	2.6	2.2	3.2
고용률	60.9	70.8	51.3	64.6	75.7	53.5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8. 기준

- 2017년 기준 충북의 15~54세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은 32.7%, 경력단절여성은 17.6%를 차지하고 있음. 즉, 출산 및 육아, 돌봄 등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였던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여전히 많이 있음.

<표> 충북 경력단절여성 현황

(단위 : 천명)

	2014	2015	2016	2017
15-54세 기혼여성	299	297	291	284
비취업여성	110	104	106	93
경력단절여성	67	57	58	50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과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충북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임.
-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충북지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에서는 법 제3조에 근거해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토록 규정하였음.

-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여성가족부와 통계청¹⁾)에서 실시하는 전국 차원의 실태조사 외에는 충청북도 차원의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중앙정부의 전국차원의 실태조사는 조사 케이스의 규모가 작아 충청북도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③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충청북도만의 시계열적인 자료로서의 그 유용도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청북도의 관련 통계가 시계열적으로 축적되고 관리·활용되어 질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망 직종 선정 및 취업, 인턴취업,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 등 추진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시행중인 충청북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1) 현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래에 제시하는 상위법령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실태
 3.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실태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충청북도 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현황(7개소) :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1), 충북산단형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1), 기초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청주2, 충주1, 제천1, 영동1)
-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을 여성취업 및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직업훈련, 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절차상 지역 활동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18. 9.19.), 입법예고, 담당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거쳤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